

NAFTA 반덤핑/상계관세의 분쟁해결제도

박 노 형

고려대, 법학

I. 문제의 제기

국제무역체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부과이다. 이들 관세는 덤프링과 보조금이라는 소위 ‘불공정무역행위(unfair trade practice)’에 대한 GATT법상 허가된 보복조치이다. 이들 불공정무역행위가 비교우위에 따른 시장경쟁체제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통하여 불공정이익을 상쇄시켜서 자유경쟁적인 국제무역체제를 지키자는 것이다. 다만, 근래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가 거의 제한없이 자의적으로 부과되어 새로운 보호무역장치로서 비난받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있어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적극적이다.¹⁾ 미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을 때도 그렇지만 이들 두 국가에 멕시코가 합류하여 북미자유무역 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NAFTA라 함]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미국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부과에 따른 분쟁에 대하여 특별한 해결장치를 마련하여 놓고 있다. 다음에서도 언급되지만, 미국과 캐나다가 1988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Canada- United States Free-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함]에서의 이들 분쟁해결절차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1) 미국, EC, 캐나다 및 호주가 1980년 7월까지 세계 전체 반덤핑조치의 약 98%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이들 4개국은, EC를 한 국가로 간주할 때, 거의 비슷하게 반덤핑조치를 부과하였다. 채육, 「GATT 및 주요선진국의 반덤핑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 51(1993)」 참조.

한국과 같이 미국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국가로서는 미국과의 이들 분야의 분쟁 해결에 보다 특별한 장치가 있기를 바랄 것이다. 더욱이 NAFTA는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의 3개국가만의 봉쇄된 협정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게도 개방되게 되어 있다.²⁾ 유럽연합과는 달리 NAFTA의 체약국이 되는 자격이 북미나 남미 등 지역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NAFTA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점에서 NAFTA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부과에 따른 분쟁 해결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연구는 한국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가 GATT의 주요 체약국³⁾이라는 점에서 NAFTA의 법적 연구는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II.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

NAFTA는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세 국가가 그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조약이다. 1994년 1월 1일 똑같은 날짜에 출범한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과 함께 NAFTA는 그 동안의 국제경제질서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점에서 아주 야심적이다. NAFTA의 체약국인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는 공동목적을 똑같이 가지고는 있지만, NAFTA의 이들 세 체약국에 대한 효과는 개별적이며 차별적일 것이다. 물론 이들 세 체약국은 국내외에 NAFTA가 특히 자신에게 긍정적인 경제사회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분명히 분야에 따라서는 이해득실의 정도가 서로 다를 것이다. 이들 세 체약국의 정치경제사회체제가 서로 다른 것도 한 이유가 될

2) 2205조.

3) 미국과 캐나다는 GATT에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일본과 함께 소위 'Quads'라고 불린다. 즉 이들은 국제무역체제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4대 국제법주체로 인정되고 있다. 멕시코는 국제무역액을 놓고 비교할 때 한국이나 홍콩, 대만과 아직은 비교될 수는 없지만, 개도국들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1948년 이후, EU회원국들은 1948년부터 1960년대 초반 이후, 멕시코는 1986년 이후 GATT체약국이다.

것이다. 따라서, 이들 세 체약국은 NAFTA라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약속을 하였지만, 이 조약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는 세 체약국 사이에 입장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예컨대 서로의 언어가 다른 점도 NAFTA라는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을 보일 수밖에 없게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떤 내용의 조약이든 그 조약의 말미에는 그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 야기 될 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는 것이다.⁴⁾ NAFTA에도 역시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다. NAFTA의 분쟁해결에 관한 특이한 점은 여러 분야에 대한 독립된 분쟁해결절차가 있다는 점이다. 즉 NAFTA에는 투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환경, 노동, 및 일반 분쟁에 관하여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NAFTA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부과에 대한 분쟁해결제도를 최근 타결된 UR 협상의 WTO협정에 비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III. 반덤핑/상계관세 분쟁해결제도

캐나다와 멕시코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이하 반덤핑/상계관세라 함]의 부과가 가장 부담이 되고 있었다. 실제로 1988년 FTA의 체결에 캐나다의 가장 큰 바람은 캐나다산 상품이 미국의 덤픽과 보조금에 대한 소위 불공정무역법의 적용 배제였다.⁵⁾ NAFTA의 19장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에 관한 분쟁의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⁶⁾ NAFTA의 이 분야의 규정은 FTA의 규정보다

- 4) 분쟁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분쟁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분쟁당사자를 만족시키게끔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쟁해결은 일종의 선례로서 후일의 유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법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 5) Joseph A. Greenwald, "Dispute Settlement in 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526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177(March 1993). 멕시코도 같은 이유로 FTA의 반덤핑/상계관세의 분쟁에 관한 특별제도가 NAFTA에 도입되기 를 원하였다고 한다. *Id.*, at 179.
- 6) FTA의 경우에 반덤핑/상계관세의 분쟁해결제도가 다른 분쟁해결제도보다 훨씬 많이 적용되었다고 한다. Gary N. Horlick and F. Amanda DeBusk, *Dispute Resolution Panels of the U.S.-Canada Free Trade Agreement: The First Two and One-Half*

개선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⁷⁾

1. 양국간패널의 설치

NAFTA체약국들은 반덤핑/상계관세에 관한 최종적 결정을 심사할 양국간패널(binational panel)[이하 패널이라 함]을 요청할 수 있다.⁸⁾ 이들 체약국들은 반덤핑/상계관세사건에 있어서 국내의 사법적 심사를 대체하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⁹⁾ 즉 NAFTA의 3개국은 서로간에 자국의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한 자국내에서의 사법적 관할을 포기하고, NAFTA에 별도로 마련된 패널의 심사에 따르기로 약속한 것이다.¹⁰⁾ 다만 패널의 심사기준이 각각 자국의 국내법에서 규정된 사법적 심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패널의 심사제도로 인하여 자국의 반덤핑/상계관세에 관한 국내법제도를 수정할 필요는 없게 된다.¹¹⁾ 패널절차는 사법적 절차에 준하고 있다.¹²⁾ 즉 분쟁당사자들은

Years, 37 McGill L.J. 578, 583 (1992) 참조[이하 Horlick이라 함].

- 7) 우선 NAFTA에는 FTA에 없는 패널심사제도의 보호규정이 있으며 (1905조), NAFTA는 FTA보다 자세한 협의절차를 두고 있으며 (1907조), NAFTA는 FTA에서와는 달리 특별이의심판위원회(Extraordinary Challenge Committee)의 심사기준의 예로서 심사 패널이 적절한 심사기준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패널의 명백한 월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1904(13)(a)(iii)조), NAFTA는 FTA에서와는 달리 작업그룹이나 19장의 존속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1906조 및 1907조).
- 8) 1904(2)조. 패널의 심사 대상은 해당 NAFTA체약국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s)’이다. 1904(10)조.
- 9) 1904(2)조.
- 10) 따라서 NAFTA체약국은 패널의 결정에 대한 자국에서의 사법적 심사를 국내법상 요구할 수 없다. 1904(11)조. 패널의 또 다른 기능은 NAFTA체약국의 반덤핑/상계관세에 관하여 차후에 수정된 국내법이 GATT의 관련법 및 NAFTA의 목적에 일치하는지에 관한 선언적 의견(declaratory opinion)을 주는 것이다. 1903조.
- 11) 물론 이들 NAFTA체약국들은 패널의 절차나 결정의 이해에 관하여는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nnex 1904.15(d). 다만 미국과 캐나다와는 달리 관련 법제도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인정된 멕시코는 다음과 같은 보다 실체적인 수정을 하게 되어 있다. 예컨대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의 결정절차에 수출업자 등 외국인 이해관련자(foreign interests)의 완전한 참여의 보장과 부과 결정에 부과이유와 법적 근거의 명시 등이다. Annex 1904.15(d), Part B-Schedule of Mexico 참조.

패널에 소송사건적요서(briefs)를 제출하고, 패널은 구두주장을 듣도록 되어 있다.¹³⁾ 패널 절차는 분쟁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한 비공개이다.¹⁴⁾

패널은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최종결정이 그 결정국, 즉 수입국의 관련 국내법규정¹⁵⁾에 의거하였는가를 판단하게 된다.¹⁶⁾ 즉 패널은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결정이 내려진 NAFTA체약국의 국내법원이 적용할 똑같은 심사기준(standard of review)을 적용하게 된다.¹⁷⁾ 미국의 심사기준은 그 부과결정이 기록상 실질적인 증거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거나 또는 법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는 경우이다.¹⁸⁾ 캐나다의 심사기준은 반덤핑/상계관세부과기관이 월권행위를 하였는가,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는가, 결정에 있어서 법률적인 착오를 하였는가, 결정이 잘못된 사실확인에 근거하였는가, 기만에 의하여 결정하였는가, 또는 위법의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였는가 등이다.¹⁹⁾ 멕시코의 심사기준은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결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이 될 경우이다: 결정기관의 권한의 흠풀, 공식적인 법적 요건의 생략, 절차상의 흠풀, 부정확한 사실, 법상의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재량권의 행사 등.²⁰⁾

12) NAFTA체약국들은 1994년 1월 1일까지 패널의 수행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을 채택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은 국내법원의 상소절차(judici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에 준한다. 1904(14)조.

13) 1904(14)조.

14) Annex 1903.2(1).

15) 여기서의 '반덤핑/상계관세법(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law)'은 해당 국내 법원이 관련 조사기관의 최종결정을 심사할 때 고려할 만한 자료로서 '관련 법규정, 입법역사, 규칙, 행정관행 및 판례(relevant statutes, legislative history, regulations, administrative practice and judicial precedents)'를 의미한다. 1904(2)조.

16) 이 점에서 NAFTA체약국들의 반덤핑/상계관세에 관한 국내법은 NAFTA의 일부가 된다. 1904(2)조.

17) 1904(3)조. 위의 심사기준이외에 패널은 수입국 국내법원이 적용하였을 일반적인 법적 원칙(general legal principles)을 적용하게 된다. *Id.*

18) 1911조 및 Annex 1991. 이 기준은 미국의 Section 516A(b)(1) of the Tariff Act of 1930에 규정되어 있다.

19) 1911조 및 Annex 1911. 이 기준은 캐나다의 Section 18.1(4) of the Federal Court Act에 규정되어 있다.

20) 1911조 및 Annex 1911. 이 기준은 멕시코의 Article 238 of the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에 규정되어 있다.

2. 패널의 구성

분쟁당사국 양측이 각각 두 명의 패널위원을 선정하고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마지막 한 패널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 패널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첨에 의하게 된다.²¹⁾ NAFTA는 75명의 패널위원 후보자명부의 비치를 규정하고 있다.²²⁾ 따라서, NAFTA체약국들은 각각 25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이들 후보자는 NAFTA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하여야 하지만, 선정된 패널위원이 반드시 선정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예컨대 멕시코는 미국 시민인 변호사를 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 후보자는 최대한 한 현직 또는 전직 판사일 것이 요구된다.²³⁾ 패널결정이 내려진 12건 중에서 9건이 만장일치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한다.²⁴⁾ 또한 패널위원의 국적과 패널결정과는 아무런 상호관련성이 없었다고 한다.²⁵⁾

3. 패널절차의 시간적 제한

NAFTA는 패널설치의 요구에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단계마다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다.²⁶⁾ 종국적으로는 패널의 설치 요구일부터 315일 내에 패널결정이 내려져야 한다.²⁷⁾ 예컨대 패널 설치의 요구는 일반적으로 해당 수입국의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결정이 해당 수입국의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21) Annex 1901.2.

22) Annex 1901.2(1).

23) *Id.* 이 요건은 미국의 주장을 반영하였다고 한다. Gary N. Horlick and F. Amanda DeBuck, "Dispute Resolution under NAFTA: Building on the U.S.-Canada FTA, GATT, and ICSID", 27 J.W.T. 1(1993), p. 31.[이하 Horlick 1이라 함]

24) *Id.*

25) 예컨대, *Fresh, Chilled or Frozen Pork from Canada*사건에서 미국 ITC의 피해판정에 대하여 미국측 패널 구성원들은 캐나다측 패널구성원들의 의견을 쫓아 만장일치를 이루었다고 한다. *Id.*

26) 1904(14)조.

27) *Id.*

하며, 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다.²⁸⁾ 따라서,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최종결정에 대한 해당 NAFTA 체약국에서의 사법적 심사절차는 위의 30일이 경과한 후에 개시될 수 있다.²⁹⁾ 이와 같은 패널의 분쟁해결 소요시간은 미국의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의 평균 27개월에 비교하면 아주 신속하다고 볼 수 있다.³⁰⁾

4. 패널결정의 성격

패널은 해당 NAFTA 체약국의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결정을 지지할 수도 있고 또는 관련기관이 패널의 결정에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반송할 수 있다.³¹⁾ 패널은 다수결에 의하여 의사결정한다.³²⁾ 이러한 패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러한 법적 구속력은 해당 사건의 해당분쟁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된다.³³⁾ 즉 영미법계에서는 일반적인 선례구속의 원칙은 패널의 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똑같은 내용의 분쟁에 대하여는 최소한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FTA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NAFTA에서의 패널 결정은 분쟁당사자들에게 큰 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³⁴⁾

5. 패널결정의 재심제도

분쟁당사자는 패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³⁵⁾ 패널결정을 심사할 특별이의심판위원회(Extraordinary Challenge Committee)[이하 ECC라 함]는 그

28) 1904(4)조.

29) 1904(15)(c)(i)조.

30) FTA에서의 패널절차가 315일의 시한을 제대로 준수한 예에 비추어 NAFTA의 경우 도 이러한 시간적 제한이 준수될 것이라 한다. Horlick 1, *supra* note 23, at 29.

31) 1904(8)조.

32) Annex 1901.2(5).

33) 1904(9)조.

34) FTA의 패널 결정은 정부는 물론 관련 변호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Greenwald, *supra* note 5, at 178.

35) 1904(13)조.

설치의 요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³⁶⁾ ECC의 패널결정에 대한 재심은 ECC의 설치일로부터 90일 내에 주어져야 한다.³⁷⁾ 그러나 패널결정에 대한 재심절차 (extraordinary challenge procedure)는 다음과 같이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첫째, 패널위원이 중대한 잘못, 편견 또는 심각한 이해충돌의 잘못을 범하였거나 또는 달리 행위준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거나; 둘째, 패널이 중대하게 근본적 절차규칙으로부터 일탈하였거나; 셋째, 패널이 예컨대, 적절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NAFTA에서 규정된 권한이나 관할을 초월하였어야 한다.³⁸⁾ 패널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위의 사유가 패널결정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그 사유가 패널심사의 통일성에 대한 계속된 위협이 됨을 증명하여야 한다.³⁹⁾ 패널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위의 사유에 근거한다고 판정되면 ECC는 패널결정을 취소하거나 반송할 수 있다.⁴⁰⁾ ECC의 결정은 해당 패널의 분쟁당사자들 사이의 해당 분쟁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⁴¹⁾ 패널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인정하면서 FTA의 기초자들은 이 이의제도가 빈번하지 않게 원용될 것이라 예상하였으며, 실제로 지금까지 1건의 예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⁴²⁾ 이 사건에서 ECC는 패널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의 아주 제한된 심사기준을 강조하였으며, 해당 패널결정을 지지하였다.⁴³⁾ 또한 ECC는 상소법원(appellate court)에 해당하지 않으며, 30일의 이의제

36) ECC는 NAFTA체약국 연방법원의 전현직 판사 3인으로 구성된다. Annex 1904.13(1).

37) Annex 1904.13(2). FTA의 30일의 규정보다는 보다 연장된 것이다.

38) 1904.13조.

39) 1904.13(b)조.

40) Annex 1904.13(3). 미국 국내법상 국제무역법원 (CIT)의 판결에 대한 연방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의 재판은 '새로운 심사(*de novo review*)'이지만, NAFTA에서의 패널결정에 대한 ECC의 재심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Horlick 1, *supra* note 23, at 30.

41) Annex 1904.13(3).

42) Testimony of M. Jean Anderson, Chief Counsel for International Trade, U.S. Dept. of Commerce, Subcommittee on Courts, Civil Liberties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of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00th Cong., 2nd Sess. 69, 75-76 (1988), Horlick 1, *supra* note 23, at 33에서 재인용.

43) *In the Matter of Fresh, Chilled or Frozen Pork from Canada*, ECC-91- 1904-01 USA(14 June 1991), 4 T.C.T. 7037(ECC), Horlick 1, *supra* note 23, at 33에서 재인용. ECC는 특히 재심기준의 'gross', 'serious', 'fundamental', 'materially', 'manifestly' 및

기기간은 ECC가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기에는 너무 짧다고 밝혔다.⁴⁴⁾

NAFTA는 분쟁당사자의 국내법이 패널의 심사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패널의 심사기능을 보장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⁴⁵⁾ 패널심사절차에서의 부당한 개입의 존재를 주장하는 분쟁당사국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⁴⁶⁾ 이러한 협의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 그 이의제기국은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⁴⁷⁾ 특별위원회는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이 있는가에 대하여 판정을 내리고, 분쟁당사국들은 그러한 판정이 있은 후 60일 내에 상호간에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⁴⁸⁾ 상호간의 만족스러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제기 당사국은 해당 패널절차를 정지시키거나 상대방에 대한 NAFTA상의 이익의 부여를 정지시킬 수 있다.⁴⁹⁾

IV. 결어: WTO협정과의 비교

1947년 GATT가 채택된 이래 GATT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많은 비난이 제기되고 있었다. 예컨대 GATT의 분쟁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패널보고서의 법적 논리가 질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패널보고서가 분쟁당사자의 반대로 채택되기 가 어려우며, 패널보고서의 이행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었다. 미국은 이러한

'threatens'의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그 기준의 엄격성이 강조되었다고 밝혔다. *Id.*

44) *Id.* NAFTA에서는 90일로 연장되었다. Annex 1904.13(2). 이렇게 연장된 기간에도 불구하고, CIT에서 CAFC에의 항소에 평균 10개월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ECC에의 이의제기가 훨씬 간편할 것이다. Horlick, *supra* note 6, at 586.

45) 1905조. 이 장치는 멕시코가 현법상 요건으로 패널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게 될 것을 염려한 미국의 주장으로 마련되었다. Horlick, *supra* note 23, at 34. 이 절차에서도 단계마다 법정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46) 1905(1)조.

47) 1905(2)조.

48) 1905(7)조.

49) 1905(8)조.

GATT체제에서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이유로 자국의 일방적인 무역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GATT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은 1993년 12월 타결된 UR협정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다. 즉 WTO협정에서는 패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시간적 제한이 부과되며, 패널보고서의 상소제도가 마련되며, 패널 설치의 요구 및 패널보고서의 채택시에 거부권이 사실상 제거되었다.

분쟁해결에 있어서 NAFTA와 WTO협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NAFTA의 분쟁해결제도는 여러 분야별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만⁵⁰⁾, WTO협정에서의 분쟁해결제도는 원칙적으로 하나로 통일되어 규정되어 있다.⁵¹⁾ 둘째, NAFTA의 반덤핑/상계관세의 분쟁해결제도는 NAFTA체약국의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 결정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법원의 사법심사를 대체하는 패널 및 ECC의 설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패널의 심사는 사실상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NAFTA체약국 국내법원의 심사에 준하게 된다. 즉 NAFTA 패널의 기능은 NAFTA체약국의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 결정이 자신의 관련 국내법규정에 의거하였는가의 결정이다. 다만, 국내법원 대신에 분쟁당사국들이 지정한 위원들로 구성되는 패널이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에서 내재하기 쉬운 정치적 고려를 상당히 제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WTO협정에서의 반덤핑/상계관세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WTO회원국의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조치가 WTO 협정의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에 일치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즉 WTO 협정상의 분쟁해결은 WTO회원국의 국내법이 관련 WTO협정에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WTO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이 보다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NAFTA의 패널은 국제무역법에 정통한 현직이나 전직 판사 등 법률가들이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 요구되며 그 패널의 위원장은 반드시

50) NAFTA에는 본고의 대상인 반덤핑/상계관세의 분쟁에 대한 해결제도를 비롯하여 투자의 분쟁, 금융서비스의 분쟁, 노동협력의 분쟁, 환경협력의 분쟁 및 일반적인 분쟁의 해결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51) GATT에서는 GATT협정 XXIII조의 일반적인 분쟁해결제도 외에 기술적 장벽의 분쟁, 정부조달의 분쟁, 상계관세의 분쟁, 관세평가의 분쟁, 반덤핑관세의 분쟁에 관하여 별도의 해결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3년 12월 UR협상이 타결되면서, 위의 분야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분쟁해결제도(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가 마련되어 WTO체제내에서의 통일된 분쟁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률가이길 요구하나, WTO협정의 패널은 반드시 법률가들로 구성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WTO협정의 패널 결정은 법적인 논리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넷째, NAFTA의 패널은 분쟁당사국민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WTO협정의 패널은 분쟁당사국 국민으로 구성될 수 없다. 다섯째, NAFTA의 패널 절차는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들이 원하지 않는 한 비공개이나, WTO협정의 패널 절차는 예외없이 비공개이다. 여섯째, NAFTA의 분쟁해결절차는 단계마다 법정 시한이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늦어도 315일내에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종래의 GATT분쟁해결절차는 그 더딘 절차의 진행을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WTO협정상의 새로운 분쟁해결절차는 NAFTA와 마찬가지로 단계마다 법정 시한을 명문화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의 측면에서는 양자 사이의 큰 차이는 사라지게 되었다.

반덤핑/상계관세에 관한 분쟁해결에 관한 NAFTA의 특별한 제도는 다자무역제 도의 근간인 WTO협정의 분쟁해결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실제로 FTA의 GATT와의 일치여부를 검토한 작업반(working party) 토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⁵²⁾ 반덤핑/상계관세의 분쟁에 관한 FTA의 규정이 NAFTA에서 그대로 수용되었지만, GATT의 분쟁해결제도는 WTO협정에서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위의 작업반의 토의내용이 NAFTA와 WTO협정의 논의에 그대로 유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무역강대국인 미국과 캐나다 및 개발도상국의 대표격인 멕시코가 함께 하는 NAFTA에서의 반덤핑/상계관세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WTO협정에서의 관련 분쟁의 해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NAFTA에서의 분쟁해결 결과와 WTO협정에서의 분쟁해결 결과가 상충될 경우일 것이다.⁵³⁾ 물론, GATT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GATT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다른 법체제에서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GATT의 일관된 관행이지만, 현실적으로는 WTO체제의 발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임은 틀림없다.

52) GATT, BISD 38S/75 (1992).

53) 이러한 가상적인 경우에 대하여 미국이나 캐나다는 분명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Id.*

V. 결어

NAFTA의 반덤핑/상계관세에 관한 분쟁해결 절차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가지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NAFTA의 반덤핑/상계관세에 관한 분쟁해결 절차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하나씩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NAFTA의 세 체약국이 대표적인 국제보호 무역장치가 되어 버린 반덤핑/상계관세의 자의적 부과를 포기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패널 절차의 투명성의 보장으로 적어도 NAFTA의 세 체약국 사이의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에 대한 분쟁은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다.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에 대한 분쟁이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국제무역의 평화로운 질서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둘째,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성된 NAFTA에서의 반덤핑/상계관세에 관한 분쟁이 WTO체제 밖에서 해결됨에 따라 이들 문제에 대한 NAFTA와 WTO사이의 분쟁해결과 다르게 될 경우에는, NAFTA체약국들의 지위를 고려할 때, 반덤핑/상계관세에 관한 국제법 질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NAFTA에 한국 등 보다 많은 국가들이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우려의 충격이 더욱 강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NAFTA에서의 반덤핑/상계관세에 관한 분쟁해결 제도가 참신하고 획기적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한국이 당분간 NAFTA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거대한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캐나다와 멕시코에 우회 진출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NAFTA의 반덤핑/상계관세에 관한 분쟁해결제도에 계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